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37 호

2003 년 9 월 26 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9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0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1호(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2호(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16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7호(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8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5호(2003년도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계획공고)-----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6호(긴급용역(전자)재입찰공고<버스전용차로>및특정관리지역불법주정차단속민간용역)-----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8호(신조및폐기공인공고)-----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9호(2003-7회차압류차량공매공고)----- 3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0호(긴급용역재입찰공고(소래포구해안쓰레기처리용역))-----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1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4호(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 3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5호(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3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9. 26.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목적사업)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발족과 목적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區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공단위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 함.

○ 주요골자

-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기존 목적사업 명칭의 조정 및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제2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9. 26.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1] 내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3]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수당의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기함

○ 주요골자

-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공무원의 인상액(300,000원)만큼 일률적으로 인상(제2조)
- 방법수당 항목을 삭제함(제3조)

[별표1]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9. 26.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

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

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중 “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4〕 및 〔별표5〕의“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 변경
-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제7조제3호)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제10조제2항)
-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위탁계약 사항 및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제12조제4항 내지 제5항)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제1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9. 26.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 설치된 해수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소래포구 해안경관의 제고와 소래포구의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 설치된 해수취수·정수시설 및 송수관·저장탱크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②“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기타 관리시설등의 시설설치를 말한다.

③“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매월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 관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한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장비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탁관리)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논현동 179-33번지상에 건립중인 해수공급시설이 2003년 9월말 준공예정인 바, 동 시설이 완료되면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소래지역의 해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정함

○ 주요골자

- 목적 및 해수공급시설의 정의(제1조 내지 제2조)
- 해수공급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제5조)
-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의 권한(제6조)
- 위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제8조)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9. 2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모집) ①조례 제6조3항에 의한 단원을 정기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단원의 정기모집에 응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남동구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진(3.5cm×4.5cm) 1매.
3.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다만, 합격자에 한함.)

제3조(단원의 선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휘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일반전형으로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2.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3. 기타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 및 반주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 2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위·해촉)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합창단원 위·해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회) ①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사항 및 활동사항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공휴일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수당)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별표] 와 같다.

제8조(목적외 활동)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과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남동구여성합창단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단원의 역할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취적인 합창단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합당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함

○ 주요골자

- 단원을 정기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조)
 - 지휘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일반전형으로 부구청장이 위촉하며,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제3조)
 -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고,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자율적으로 한다(제5조)
 -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며, 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하되, 공휴일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
- *****

【별표】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휘 자	반 주 자	비 고
지급액	80,000원	60,000원	1회 기준

※ 참조사항

1. 1회 연습이라함은 1일 2~4시간으로 규정한다.
2. 1월에 15회이상의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

【별지 제 1호 서식】

지 원 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직 업		
최종학교명		전공분야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사 항	

본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남동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접 수 자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주소 :

성명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며, 단원으로 명예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 축 장

남동구 ○○동 번지 호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단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5호

2003년도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계획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인천광역시남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일시 : 2003. 10. 16일
2. 교육장소 : 남동구청2층 대회의실
3. 교육대상 :
 - 신규교육 : 2001년 교육실시후 신규로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 보수교육 : 2001년 교육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4. 교육내용 및 시간

종류	시 간		내 용	비 고
계	8시간(중식시간 제외 7시간)			
신규 교육	09:00 ~ 09:20	20'	○ 등 록	협 회
	09:20 ~ 12:00	160'	○ 표시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구조 및 제작, 시공안전 - 옥외광고물의 도시미관(색채 등)	민영박 (협회 전임강사)
중식	~13:00	60'	○ 중 식	개인별
신규 · 보수 교육	~13:50	50'	○ 종사자의 자세	노윤태 (인천지부장)
	~14:00	10'	○ 휴 식	
	~16:40	160'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 시 및 군·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김정수 (서울시 공무원) 이승국 (옥외광고연구 소장)
	~17:00	20'	○ 수료증 교부 등	협 회

5. 교육비용(교재비, 강사비등 제비용)

- 신규교육 : 25,000원
- 보수교육 : 20,000원

2003. 9.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6호

긴급용역(전자)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버스전용차로 및 특정(중점)관리지역 불법주정차단속(계도)민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감정기간 2003. 10 ~ 2004. 2. 28일)

다. 용역내용

(1) 대 상 : 버스전용차로 5개노선 21km 및 특정(중점)관리지역 3.4km

(2) 범 위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 위반차량 증거 채증 및 운영시간외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보조, 도보예방순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 부착 및 이동요구, 단속활동 보조 등
- 필요시 주차안내 및 교통정리
-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인력 및 장비

- 용역원 : 8명
- 경차 : 4대
- 통신장비 : 무전기 또는 전화기(휴대폰) 8대
- 기타 : 디지털카메라 또는 비디오키메라 4대

다. 기초금액 : 91,798천원(부가세 포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3. 09. 24(수) 09:00~2003. 09. 29(월) 10:00

※ 인력 및 장비보유 기타증빙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남동구청 교통과로 반드시 방문 제출

(단, 기간내 미제출자는 개찰시 제외)

- 인력현황 : 재직증명서 8매(1인 1매)
- 장비현황 : 자동차등록증 4매 또는 임대계약서(리스) 사본 4매(대당 1매)
- 기타 : 법인등기부등본 [경비(용역)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03. 09. 29(월)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과업설명 : 입찰기간중 남동구청 교통과 방문

※ 과업설명회 참여(방문)업체 및 중비서류 제출업체만이 투찰이 가능함.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나.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이용자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용역)사업자 등록법인 업체

3.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다. 입찰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로 제출
- 라.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적격검사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 가격의 하한선(87.745%)미만 부적격자 및 1.2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0호)에 의한 처리 경험 및 경영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기한일 : 2003년 10월 6일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가.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 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과)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과)(☎453-273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 9. 22.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8호

신조및폐기공인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신조(폐기사유) :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교체
2. 신조공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3. 9. 29
3.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 구 월 2 동 장 의 인 (구월2동민원전용)		인천광역시남동구 구 월 2 동 장 의 인 (구월2동민원전용)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39호

2003-7회차압류차량공매공고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매 공고 합니다.

가.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공매차수
	품명	제작자,규격,요량등	수량		
2003-1	인천30구6163	'95마르샤	1	1,800,000	2차
2003-4	인천35나6660	'94스쿠프	1	180,000	2차
2003-8	인천 2머9095	'94 티 코	1	40,000	3차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2003. 09. 25. - 2003. 10. 06. 24:00(12간)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

다. 입찰 참여마감일시 : 2003년 10월 06(수)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3년 10월 07일(목) 10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 입찰참여 마감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 리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자.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징수관리팀 차량공매담당 ☎032-453-22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9.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0호

(긴급)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소래포구 해안쓰레기(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12. 15

다.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349톤

라. 용역설계금액 : 100,093,200원(추정가격 90,993,810원 부가세 9,099,39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100,093,2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해당없음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03. 9. 26(금)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03. 9. 29(월) 14:00

5. 개찰일시 : 2003. 9. 29(월) 15:00(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입찰집행관PC

7. 입찰참가 자격

가. 인천.서울.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소각전문업체로 명기된 업체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같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방식 및 입찰수수료 납부등

가. 총액입찰이며, 낙찰자는 계약시 우리구에서 산정한 톤당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온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0호, 2002.10. 2)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적용(2002년)
 - ※ 자기자본비율 : 37.73%, 유동비율 103.89%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 타

-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입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바. 본 공고문은 남동구청홈페이지(<http://www.namdong.incheo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및 집행」, 「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 최종낙찰자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사항은 우리구 청소과(453-2390,) 자치행정과(453-2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9.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경 리 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1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및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정중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논현.고잔동 및 간석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9. 26 ~ 2003. 10. 25 (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10. 25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368-14	가옥 점포 보일러실 및 창고 현관 화장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스레트 브릭스레트	37.62 28.88 5.32 20.79 2.70	서성민	남동구 논현동 368-14	
2	논현동	산71	가옥 가추 창고1 창고2 관정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84.38 28.84 8.32 3.75 1식	최인원	남동구 논현동 산71	
3	논현동	산71	가옥 창고겸 보일러실 관정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84.52 17.00 1식	최정하	남동구 논현동 산71	
4	논현동	산71	가옥 화장실 차양막 관정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함석	22.08 2.25 2.40 1식	김재길	남동구 논현동 산71	
5	논현동	산71	가옥 화장실	브릭스레트 목재함석	68.85 2.25	이대규	남동구 논현동 산71	
6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5.20	김영철	남동구 논현동 산71	
7	간석동	614	창고 포장 포장 창고 창고 포장	철골 콘크리트 콘크리트 함석및 목조 목조천막 콘크리트	33.6 1,802.64 285.24 32.8 8 145.61	㈜한일 종합상 사	부평구 십정동 361-7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4호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소매인의 지정등)에 의거 신축대형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공고대상 : 인천남동구 구월동 1135-1 외 1필지 청진네오스빌
- 공고기간 : 2003. 9. 29 ~ 10. 08 (10일간)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일반소매인 1개소)
- 신청기간 : 2003. 10. 06 ~ 10. 08(3일간)
- 지정방법 : 공개추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권리확인서
- 접 수 처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문의전화 032-453-2473)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자와 동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다른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

2003. 9.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45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0외 7필지 탑프라자2 외 1건에 대한 건축물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 탑프라자2 】

심의 일시		2003. 9. 19(금) 14:00		심의장소	남동구청4층 소회의실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520외 7필지			
건 축 주		이순각 외 9인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1	햇살-풍경	조각	승인	○ 곡선으로 올라간 두기둥(진취적 기상)의 맛맛함을 조정하여 비갈부분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층 기법 시공 ○ 양쪽기둥의 계단은 비대칭으로 시공 ○ 양쪽기둥 사이공간은 30cm에서 20cm로 조정	

【 SR 26차 노빌리안 명품 】

심의 일시		2003. 9. 25(목) 14:00		심의장소	남동구청4층 소회의실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129-22			
건 축 주		SR건설 (주)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	Composition- II	조각	승인	없음	

2003.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